

국내 공연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지원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민유정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예술, 특히 공연예술 산업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산업 선진국인 미국 공연예술 산업에서의 기부금 관련 세제정책과 최근 시장경제의 확산, 코로나 19라는 위기 속에서 공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미국에서의 기부 세제 지원의 사례들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공연예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세청,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논문등을 분석하여 국내 공연예술산업의 조세지원 관련법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련법규정과 각종 보고서, 국내의 정보D/B 및 단행본 등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참고해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을 축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연예술이 발전한 미국과 비교하여 정부지원의 선 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예술분야의 세법상 기부금 인정단체의 수를 늘려야 한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폭넓은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가 중요하며, 넷째, 예술단체 내에서의 재정자립도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법정 기부금 단체의 개수가 현저히 적고, 세부적인 규정들도 보완이 필요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수혜 과정 및 주체의 공신력 확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연예술품 기부금 조세 지원법 및 관련 근거 법들의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산업의 내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Tax Incentive(조세지원), Tax Deduction(조세감면), Donation (예술 기부), Perfomence Industry(공연예술산업)

I. 서론

I.1. 연구의 배경

문화예술의 가치는 공공재적인 성격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 GDP와 고용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타 산업에 파생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으로 문화 수요는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1인 가구 증가로 문화 활동 참여와 체험방식이 다양화되는 등 경제적 환경 및 사회문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문화정책의 대응 방향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2014년도 문화재정 2% 달성 이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지원 강화를 과제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 보호 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거나, 미술품등의 감정평가제를 도입하여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미술품 등 기부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정책방안과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부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이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공연예술시장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문화예술 지원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문화예술지원규모 중 공연예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9%로 타 분야에 비하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또한,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되고 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공연예술산업의 전반적인 창작 및 운영 여건이 악화되었다.

I.2. 연구 목적

공연예술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자를 결정하는 전적인 동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기업 등의 주요한 기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분야의 기부금 세제혜택 현황은 타 국가에 비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 단체 또한, 문화예술분야는 단 29곳으로, 타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공연예술산업 분야의 경우, 공공 공연장에 기부시 그대로 정부 회계로 넘어가 버려, 사업 운용자금으로 쓸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문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수준의 재정지원들은 기부금 조세제도를 포함하는 법규 및 개정안 마련, 지정기부금 단체 혜택 및 범위 확대, 현물 및 용역 기부 활성화, 기부금

* 한미회계법인, 「문화예술 기부금 세제혜택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 한국메세나협회, 「2019 연차보고서」, 2020.59-80쪽

*** 채병완, 임승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06.331-352쪽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분야의 민간지원 활성화는 물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내 공연예술 기부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미국의 세제 지원 제도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문화예술기부의 이론적고찰

II.1. 공연예술의 정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공연예술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말한다. 본질적으로는 표현자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는 형태의 예술을 가리킨다. 공연예술의 특성으로는 그 공연물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관객들이 직접 만나서 무대 공간에서 상호간의 행위를 베풀어 내는 것을 말한다. 공연 예술은 영화와 비디오 등과 달리 일회성의 특징을 갖는다.*

II.2. 기부금의 정의

기부금이란,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자원의 조달을 일컫는다.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관계가 높다. 복지자원은 민간자원과 정부자원으로 구분되며, 이는 조세, 기부, 이용료로 충당된다. 자발적 기부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을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자원은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수행 시 효율적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II.3. 공연예술기부의 정의

공연예술은 초기비용과 진입장벽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때문에 제약적인 한계에 의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G.보웬과 J. 보물은 공연예술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연제작부터 완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고질적 비용병(cost disease)’이라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지적했다. 때문에, 공연산업은 시장경제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정부주도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보물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조세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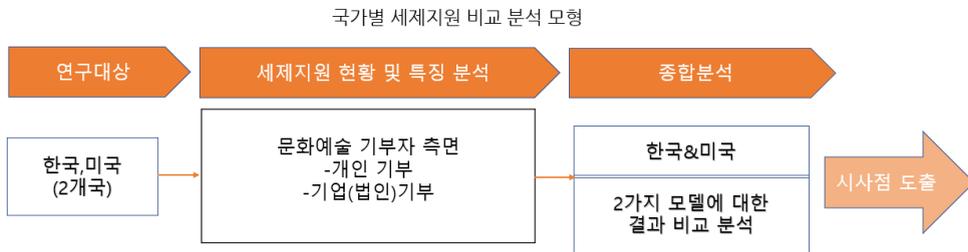
* 위중수, 「공연예술 관람 결정요인이 관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실용음악석사논문

** 채병완, 임승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06.331-352쪽

*** 이해주, 「문화경제학의 역사적 개념 및 방향에 관한연구」, 『생활과학논집』, 2002, Vol.15, 중앙대학교 생활

현재 국내에서는 전체적인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서론에 제시한 것과 같이 공연예술산업의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단순한 정부주도의 보조금 지원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민간의 기부를 이끌어내어 재정자립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따라서 전술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보물과 보웬의 논의를 바탕으로 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예술경제 사상과 문화예술기부가 공연예술의 딜레마 이론의 비용병 효과에 따른 문화경제학의 정부 지원 논리를 논의하였다. 또한, Nicolas J. Duquette(2016)** 연구에서는 가격탄력성과 같은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 등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세제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콘텐츠 세제지원 비교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을 보완해 그림1과 같은 ‘국가별 조세지원 비교 분석 모형’을 설정했다.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문화예술분야의 ‘국가별 조세지원’을 문화예술 개인기부자와 법인 기부자로 구분하여 각 나라별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고, 문화예술기부가 재정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자립도 및 선순환구조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현재 국내 문화예술기부 조세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IV. 결과 분석

과학연구소, pp.151-164.

*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2020.92쪽

** Nicolas J. Duquette, 「Do Tax Incentives Affect Charitable Contributions? Evidence from Public Charities' Reported Revenues」, 2016.5,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7, 51-69

*** 유지운, 김창욱, 이상규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제도 비교 연구 : 미국, 영국, 프랑스,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IV.1. 문화예술 개인 기부자

1)한국

개인주도의 기부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소득세법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며, 기부금 종류별세액공제 또는 거주자 요건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한도 또한 다르다.

거주자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이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문화예술분야 기부금 단체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1 소득세법상 문화예술분야 50%한도기부금(전,법정 기부금) 및 10%한도기부금(전,지정기부금) 단체]*

구분	세법조문	내용
50%한도기부금 (전,법정 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
10%한도기부금 (전,지정기부금)	소령 제 80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소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2)미국

미국의 경우, 개인 기부는 소득세(federal income tax)공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조정된 총 소득의 50%,30%,20%로 구분되며,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현금,현물,용역) 및 기부받는 단체의 분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현금, 현물자산, 용역 등)과 해당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법인 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화예술단체가 내국 세법 제 501조(c)(3)에 해당하는 단체로 국세청(IRS)의 인정을 받으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술단체는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간주 되어 미국 연방법상 면세 지위를

* 한미회계법인,「문화예술 기부금 세제혜택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연계 된다. 미국의 면세 관련 단체는 공익자선단체, 민간재단(사업재단, 비 사업재단 중 특정 요건 충족재단)이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에 개인 기부자가 기부시 총 소득의 50% 한도로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면세단체에 기부시 총 소득의 30%한도로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현물기부의 경우는 총소득의 20%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V.2. 문화예술 법인(기업) 기부자

1)한국

법인주도의 기부는 현행세법 중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기업)의 기부금은 법인의 목적이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 지출 손금산입 허용범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그만큼 과세소득금액 및 법인세 산출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탈세나 세금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며 세금을 감면해주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50% 한도기부금(전,법정 기부금)도 10% 한도기부금(전,지정기부금)도 아닌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손금 산입 한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손금 불산입한다.

현행법상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다.

[표 2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분야 50%한도기부금(전,법정 기부금) 및 10%한도기부금(전,지정기부금) 단체]*

구분	세법조문	내용
50%한도기부금 (전,법정 기부금)	법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공연장에 기부하는 경우
	법법 제 24조 제 2항 제 7호	8. 문화예술진흥법 제 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9개.
10%한도기부금 (전,지정기부금)	법령 제 80조 제2항 제1호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단체)
	법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사. 민법 제 32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공고단체 아.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한미회계법인,「문화예술 기부금 세제혜택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2)미국

법인의 기부는 개인기부와 달리 기부의 자산의 성질이나 기부받는 단체의 세법상 분류에 따른 한도 규정이 없다. 법인이 국세청(IRC) 170(c)에서 규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1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액이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후 5년간 이월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법인(기업)이 민간기부가 활발한 축에 속한다.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부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거액기부와 연간 기부프로그램, 펀드레이징 캠페인, 명명제(Naming)라는 객석 후원기부 프로그램등이 활성화 되어있다.

V.결론 및 제언

먼저 제도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문화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의 기부금 세제 혜택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식을 혼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기부금 지출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직접적으로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각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이 감소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소득공제 방식만을 차용하고 있어 한국과 과세체계 및 소득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금 세제 구조만을 가지고 국가별 기부금 세제 혜택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 문화예술분야의 세법상 기부금 인정 단체의 수가 현저히 적다. 미국은 단체별 세법상 분류나 한도가 없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면세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한국은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성격에 따라 공제율의 폭이 다양하다. 그러나, 인정되는 문화예술분야 법정 기부금 단체의 개수가 전체 1782개 중 약 29개 (약 2% 미만)으로 현저히 적고,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역시 일반적인 비영리 분야와 비교했을 때, 지정기부금 단체 약 7121개 중 문화예술분야는 687개로(약 9%) 현저히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문화예술분야 기부 자산에 대한 폭넓은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 미국은 기부를 현금, 현물, 용역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립/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법인세법에는 없는 규정으로 문화예술 분야 기부, 기증에 대한 수혜 과정 및 주체의 공신력 확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개인 기부 참여율이 낮다. 미국의 경우 세제와 연관된 체계적인

* <https://www.nanumkorea.go.kr/nts/list.do> 국세청공익법인조회

기부 프로그램이 주요 공연장마다 개발 되어 있고, 개인기부가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과 비교하여 한국의 공연장, 단체별 기부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세제혜택과의 연관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도 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을 위한 법인 위주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정책으로 메세나, 문화예술후원법 등이 시행되었지만, 법인 기부에 대하여 주주의 권익침해 또는 기부의 비순수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부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기초가 '생활문화'임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자연스럽게 개인 기부 문화까지 이어지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예술단체 내에서 기부금을 통한 재정자립도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19년 법인이 기부한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액은 3,352억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액은 약 1,778억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공연예술생태계 전반은 큰 타격을 입었고, 정부에서도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더불어 세금 유예등의 간접적인 정책도 펴나가고 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은 예술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부를 통한 재정자립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예술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술단체 내에서 기부금의 중요성과 기부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술단체의 기부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며, 예술단체와 관련한 세법 개정시에도 기부 인식향상 및 세부 사항 보완을 중심으로 한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 예술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이 우리 삶에 중요하고 그러한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절대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분야 기부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기부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도입은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다.